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3.22)

# 청원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 목 차

1	소만어린이집 위법 부당사항 청원 -----	1
---	-------------------------	---

#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청원인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2 대경 아파트101-803

- 성 명 : 이현진외 2명

나. 소개의원 : 백범영, 류영수의원

다. 접수일자 : 2013. 3. 14

라. 회부일자 : 2013. 3. 14

## 2. 청원요지

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집단사퇴를 강제하고 퇴직  
교사들의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나.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공갈 협박으로 일관 교사들을 불안하게  
특정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었음.

다. 불의에 대항하다 본의아닌 사퇴로 겪게되는 생계의 어려움과  
복직될수 있는 기회부여와 함께

라. 관련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원장을 처벌하여 차후에는 이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수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함.

## 3. 검토의견

가. 2013년 3월 14일 백범영, 류영수 위원님의 소개로 거창읍 상림리  
772번지 대경아파트 101동 803호 이현진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서,

나. 청원은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권력을 남용 보육교사 탄압과 생업을

불모로 한 언어폭행, 집단 사퇴에 따른 사유를 소상히 밝혀 원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처벌하여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본의 아닌 사퇴를 한 청원자들이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임.

다. 청원사항은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음.

라.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경우에 의회가 직접처리 할 수 있는 사항, 즉 조례안 제·개정, 폐지 등은 지방의회에서 직접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마. 소만어린이집은 2011년1월 31일부터 3년간 거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소만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처벌요구와 청원인들의 복직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 지방의회에서는 소만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청원자들의 복직기회 마련에 대해서도 그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참고자료 : 관련법 발췌

##### □ 「청원법」 제3조 ~ 제6조

[시행 2007.7.4]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 1. 14)<개정

제 2조 (명칭과 위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03.29>

제 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0.03.29>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개정 2010.03.29>

제 4조 (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2012.11.28.개정)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개정

2010.03.29>

제 5조 (입소순위) (전문개정 2012.11.28.)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 6조 (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납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 제 2 장 위탁운영

제 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단서삭제 2012.11.28)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9>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 8조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제14조의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1.28)

제 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 1. 14)(개정 2012.11.28)

제 11조 (계약의 해지) (조제목 개정 2012.11.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0.03.29>(개정 2012.11.28)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삭제 2012.11.28)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 3 장 보육교직원 관리(제목 개정 2012.11.28)

제 12조 (임면) (제목 개정 2012.11.2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03.29>

제 14조 (근무상한 연령) 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28)

1. 원장 : 60세(개정 2003. 7. 23 2012.11.28)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 57세(개정 2003. 7. 23)<개정 2010.03.29 2012.11.28>

②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 15조 (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보육교사 및 직원을 전보한다.(개정 2012.11.28)

제 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 7. 23) (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28)